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60 발의연월일: 2020. 12. 28.

발 의 자:고영인・김민철・김회재

김홍걸 • 윤관석 • 윤미향

이상헌 · 이성만 · 황운하

이수진 · 송영길 · 박성준

김승원 · 주철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,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·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 신미약·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8조제4항). 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까지" 를 "제5항까지"로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,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 ~	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달장
	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	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
	있으며,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
	직권 신청한 사실을 특별자치시
	<u>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</u>
	<u>수・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</u>
	하여야 한다.
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</u> 에 따른	<u>⑤</u> <u>제4항까지</u>
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	
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	
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	
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	
관한 제공계획(이하 "개인별지	
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	
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	
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에게 신청할 수 있다.	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까지</u> 에 따른	<u>⑥</u> <u>제5항까지</u>
복지서비스의 대상, 복지서비스	
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	

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	
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